

# 강월논문상 수상 규정

제정 : 1993년 8월 19일  
개정 : 2012년 5월 25일

## 제 1 장 상 설정의 목적

제 1 조 우리 학회는 김광식 전임회장이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의해, 강월(江月)논문 상을 설치하고, 소음진동공학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 탁월한 논문의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수상 자격

제 2 조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.

## 제 3 장 수상자 선정

제 3 조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강월논문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심사위원회는 「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」에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저자.

제 5 조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 6 조 강월논문상 심사위원회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4 장 시 상

제 7 조 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

제 8 조 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.

제 9 조 수상자가 시상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

부 칙 1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 
2. 본 규정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 강월논문상 심사위원회 규칙

제 1 조 본 규정은 강월(江月)논문상 수상규정(이하 상 규정이라 한다) 제 3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월논문상 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회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이사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며, 매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3 조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 4 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 5 조** 수상예정자의 결정은 재적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 6 조**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중요 결의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
**제 7 조**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.

**부 칙** : 본 규칙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